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과 관련한 주요 법규위반사항을 반영하고 특수여객 자동차의 점검대상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는 등 교통수단 안전점검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안전점검결과 개선권고 등 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규정(안 제1장제2절 2.3.2 나. 3))

*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

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침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대상에 특수여객 추가(안 제2장제2절 2.2, 가.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

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침에서 누락된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점검대상 자동차에 전세버스* 추가 (안 제2장제3절 3.3,
 3.3.1)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1호

라. 자동차 및 운수업종별 점검표, 자동차 및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
 착안사항에 법규 위반사항 추가 및 용어 정비(안 제2장제2절 2.4 나. 6),
 별표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건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 전화(☎) 044-201-3863, 3865 / 팩스 044-201-5586